

의안번호	2210925
의 퇴 인	송옥주 의원
회 답 일	2025. 7. 10.
추계번호	25B3296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42조의4(의무자조금에 대한 지원금 납부) 신설	도매시장법인이나 시장도매인이 제4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징수한 위탁수수료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호에 따라 의무자조금에 대한 지원금으로 납부할 수 있음	재량규정

II. 미첨부 등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42조의4(의무자조금에 대한 지원금 납부) 신설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의무자조금에 대한 지원금 납부(안 제42조의4 신설)

- 개정안은 도매시장법인이나 시장도매인이 농수산물의 판매를 위탁한 출하자로부터 징수하는 위탁수수료 중 일정 비율을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호¹⁾에 따라 의무자조금에 대한 지원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는 자조금지원²⁾, 축산자조금³⁾, 수산물자조금지원⁴⁾, 어선어업 생산자단체 육성⁵⁾ 등의 사업을 통해 거출금 및 민간 지원금 조성액의 일정 비율을 매칭 지원하고 있어, 개정안의 시행으로 자조금 조성액이 증가하는 경우 국가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표 1] 자조금 조성액 및 국비 지원 현황(2024년)

구분		품목	2024년		
			조성액 ¹⁾	국비	매칭률
농산자조금	의무 (18개)	인삼	583	700	120.0
		친환경	2,149	1,537	71.5
		백합	640	563	71.5
		키위	280	180	88.0
		배	870	746	85.7
		파프리카	1,036	1,115	107.6
		사과	1,667	1,533	92.0
		감귤	1,484	1,261	85.0
		콩나물	190	104	54.7
		참외	402	342	85.1
		절화	785	692	88.2
		포도	1,829	505	27.6
		마늘	825	995	120.6

1)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의무자조금의 재원) 의무자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의무거출금
 2. 정부의 출연금 또는 지원금
 3. 농수산물의 유통·가공·수출·수입 등과 관련된 자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지원금
 4. 의무자조금 운용수익금 등 그 밖의 수익금
- 2) 농산물가격안정기금, 3031-325
- 3) 축산발전기금, 3731-302
- 4) 수산발전기금, 3065-301
- 5) 지속가능한 어업생산체계 구축(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3150-343)의 내역사업

구분		품목	2024년		
			조성액 ¹⁾	국비	매칭률
		양파	598	570	95.3
		뽕은감	322	210	65.2
		복숭아	708	435	61.4
		자생란	392	287	73.2
		차	80	80	100.0
	임의 (4개)	블루베리	160	160	100.0
		밤	60	60	100.0
		버섯	15	15	100.0
		논콩	—	—	—
축산자조금	의무 (7개)	한우	19,441	9,305	47.9
		한돈	20,787	5,488	26.4
		우유	7,722	5,100	66.0
		계란	1,568	—	—
		닭고기	1,335	—	—
		오리	1,284	1,152	89.7
		육우	1,000	945	94.5
	임의 (2개)	사슴	75	71	94.7
		양봉	157	119	75.8
수산자조금	의무 (9개)	김	926	849	91.7
		광어	500	500	100.0
		송어	200	200	100.0
		전복	980	929	94.8
		민물장어	212	212	100.0
		향어	132	132	100.0
		메기	220	220	100.0
		관상어	123	123	100.0
		굴	250	250	100.0
	임의 (5개)	미역	100	100	100.0
		새우	50	50	100.0
		붉은대게	159	159	100.0
		바다장어	283	283	100.0
		참조기	128	128	100.0

주: 1) 조성액은 당해연도 거출금 및 민간 지원금 조성액

1. 매년 자조금 운영실적 평가를 통해 단체별 차등 지원함

2. 농산자조금의 최대 매칭률은 100%이나 품목별 거출금 납부 시차 등 발생으로 매칭률이 100% 이상으로 보이는 품목이 있을 수 있음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다만, 개정안은 도매시장법인이나 시장도매인이 현행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징수한 위탁수수료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무자조금에 대한 지원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향후 도매시장법인이나 시장도매인이 징수할 연도별 위탁수수료, 그 중 의무자조금 지원금으로 납부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및 해당 품목 자조금 조성액에 대한 국비 매칭 비율 등을 현 시점에서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곤란함
 - 「2023년도 농수산물도매시장 통계연보(2024.11.)」에 따르면, 도매시장법인 위탁수수료는 법인별로 청과부류 3.0~7.0%, 수산부류 1.5~6.0%, 축산부류 1.5% 수준임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박인재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박인재	02-6788-4650	powerreset@nabo.go.kr